##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56 발의연월일: 2021. 5. 7.

발 의 자: 김성원・金炳旭・배현진

박대수 · 정희용 · 김용판

엄태영 · 구자근 · 김영식

김정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20년 집중호우로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음. 또한,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,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에 어려움 이 커지고 있음.

현재 하수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생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,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시 하수도 운영·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 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68조의3 및 제74조제5항 신설).

##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3(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·정책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·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·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68조의3(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
	설립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
	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
	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
	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
	도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
	한다)를 설립・운영할 수 있다.
	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
	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	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
	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
	있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
	원센터의 설립・운영 및 자료
	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
	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
	<u>다.</u>
제74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・	제74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
위탁 등) ① ~ ④ (생략)	위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
	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
	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지원센터
	의 설립・운영 업무를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

# 탁할 수 있다.